

서울고등법원 2017. 2. 8 선고 2016나20181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7. 2. 8 선고 2016나201814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2. 16 선고 2014가합13434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피고, 항소인 G

변론 종결 2016. 12. 21.

판결 선고 2017. 2. 8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2. 16. 선고 2014가합1343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불가분적으로 30,880,5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

1)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/11 지분에 관하여, 원고 B, C, D에게 같은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 원고 E, F에게 같은 부동산 중 각 1/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. 4. 9.
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2)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.

나. 피고는 2016. 1. 20.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연

6,078,272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연 4,052,181원, 원고 E, F에게 각 연 2,026,09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,

가. 원고 A로부터 2,998,836원, 원고 B, C, D으로부터 각 1,999,224원, 원고 E, F로부터 각 999,61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,

1)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, 원고 B, C,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, 원고 E,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2)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16. 1. 20.부터 위 가.의 2)항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연 6,078,272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연 4,052,181원, 원고 E, F에게 각 연 2,026,09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1, 12호증(각 녹취록)의 기재는, 망인의 아들인 원고 B이 피고의 딸인 M와 망인의 생전인 2014. 4. 4. 및 2014. 6. 6. 만나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 B이 망인의 증여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, 제1심판결이 인정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뒤집을 증거가 될 수 없다.

또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갑 제5호증, 갑 제6호증의 1, 2, 갑 제7호증의 1(피고는 그 전부를 '망인의 메모'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하 그와 같이 지칭한다)은, 갑 제8, 9, 1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망인의 메모는 망인의 유품에서 발견된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및 필적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생전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작성하던 자료의 일부로 보이는 점, ② 특히 그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재산세 납부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그 부분 판결이유와 대비하여 볼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불가분채무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주문 제2항은 그 부분 판결이유에 해당 청구취지까지 보태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들 상속분에 따라 보유한다는 전제에서 합계액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, 주문의 표시만으로는 분할채무와의 구분이 불분명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각 경정한다.

재판장판사최규홍

판사엄상문

판사박지연

별지